

1992. 11.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中間 報告書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次例

I.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1. 構成의 目的 및 경위
2. 委員會의 構成
3. 委員會의 任務

II. 特別委員會의 活動

1. 活動 期間
2. 活動 方法
3. 活動 事項

III. 問題點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活動中間報告書

I. 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構成

1. 構成의 目的 및 경위

地方財政法 第73條 規程에 의거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公有財產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第14回
南區議會 임시회에서 國.공유지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2. 委員會의 構成

0.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의 전이 丁煥模 의원외 9人이 발의하여 의장이
추천에 의거 구성하였으며,
0. 國.공유지 관리 실태 파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現地 確認班을
2個組로 編成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0.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名單(14名)

조 빌	조 장	위 원
총 칼 (위원장 : 윤장길, 간사 : 이수송)		
1 조	박 남 서	오명희, 박한성, 박병화, 배영일, 이태흠, 이수송
2 조	박 호 상	박명수, 박영호, 손원익, 정환모, 문덕복

3.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의 任務

0.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가構成되었으며 本委員會의 任務는 公有財產管理計劃의 完整性과 財產 分類의適正性, 公共施設과 基本財產의 구체적 범위, 각 필지별 財產管理實態의問題點을 指出, 앞으로 효율적인 公有財產 管理 方向을 제시하고健全財政운영에 寄與하는데 있음.

II.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活動

1. 活動 期間

0. 92. 8. 1 : 國·公有地管理實態把握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
= 위원장, 간사 선출 =
0. 92. 8.11 : 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 活動 計劃書 作成
'92. 8.20 - '92. 8.31 : 서류 작성
'92.10. 1 - '92.11. 4 : 동별 방문
'92.11. 5 - : 미실시동 방문

2. 活動 方法

0. 해당 집행부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현황을 청취한 다음
0. 2개반을 편성하여 현장 답사 현장을 파악하고 地域 주민의 의견을 청취
0.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준비 상태나 자료가 부실하여 '92년내 완전 마무리 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92.10.31까지 실시하고 동별 방문 일정이 언기되었거나, 미실시한 등, 미진한 등은 '92년 정기회를 마치고 '93년도 상반기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의 업무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함.

3. 活動 事項

0. 동별 실태 파악 방문 일정 : 92.10.1 ~ 92.10.31(31일간)

0. 조별 방문 현황(23개동)

[1조 : 대연1,3,4,5,6동, 문현1-5동, 용당, 감만1동(12개동)]

[2조 : 광안1,3,4동, 용호1-4동, 남천1,2동, 수영, 망미2동(11개동)]

0. 확인

미방문동(7개동)

[1조 : 우암1,2동, 대연2동, 감만2동(4개동)]

[2조 : 망미1동, 광안2동, 민락(3개동)]

0. 活動 實績 : 別添

0. 동별 현장 방문 내역

- 남구 국·공유지 총 10,257필지에 5,884,289평방미터

중 현장 방문 10,823필지에 8,344,577평방미터

0. 방문 지목별 내역

- 국유지 6,666필지에 3,202,329평방미터중

현장 방문 6,705필지에 5,457,048평방미터

- 시유지 2,175필지에 1,774,937평방미터중

현장 방문 2,766필지에 2,479,622평방미터

- 구유지 1,416필지에 907,023평방미터중

현장 방문 1,273필지에 275,563평방미터

- 기타(학교부지) 79필지에 132,344평방미터중

현장 방문 79필지에 132,344평방미터

*현장방문 필지 및 면적은 국방부, 고육위등 구에서 관리하지 않은 국유

재산도 현장 방문 재산 포함

0. 동별 현지 방문 내역

○ 동별 현지 확인 내용

지번	지적	확인사항	비고						
문현동 985-20	국유지 (13,111 m ²)	<p>○ 배정학원 국.공유지 무단 점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기간 : 85.1.1 - 현재까지 - 변상금 부과액 : 721,519,750원 - 납부 사항 : 미납 상태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년부터 7-8년동안 변상금은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있고, 또한 체납액이 7억여원이 되어 전체 변상금 부과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p>○ 대책</p> <p>배정학원재단이 사립화 되어 있는 것은 공립, 국립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닐까 사료됨.</p>	<p>○ 변상금 낸도별 부과내역</p> <table> <tr> <td>85.1.1 - 89.12.31</td> <td>413,361,380원</td> </tr> <tr> <td>90.1.1 - 90.12.31</td> <td>148,389,320원</td> </tr> <tr> <td>91.1.1 - 91.12.31</td> <td>159,769,050원</td> </tr> </table>	85.1.1 - 89.12.31	413,361,380원	90.1.1 - 90.12.31	148,389,320원	91.1.1 - 91.12.31	159,769,050원
85.1.1 - 89.12.31	413,361,380원								
90.1.1 - 90.12.31	148,389,320원								
91.1.1 - 91.12.31	159,769,050원								
망미동 191	도로부지	망미2동 191번지 고려제강 직원훈련원앞 도로상에 물품을 폭2.5, 길이 40m정도를 임유하여 방치하므로서 도로의 기본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으며 망미동 6번지 일진금속앞 도로에도 공장용 물품을 적체하여 있고, 폐차량 1대, 2평정도의 경비실 건축등으로 도로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방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도로 공지에는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있는등 국.공유지 관리에 엇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별첨 사진 참조)							

문현동 산55-2	임야 시유지 2,182m ²	<p>0 문현여상뒷산 무단 형질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 문현1동 557-53 문현여상학교장 송병한 - 목적 : 학교운동장 활용 - 현상태 : 무단형질변경한 2,182m² 을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p>0 문제점 : 현재 변상금은 미부과한 상태이고 구청에서나 등에서는 방치해두고 있음</p> <p>0 대책 : 현재까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공용 차고 지나 주민의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p>	<p>0 문현일 30420-1768 (91.11.22)호에 의거 동에서 형질 변경 적발 보고를 하였으나 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결과 통지 방치</p>
남천2동 3-66	시유지 220.8m ²	<p>0 제목 : 무단 점유 사용 방치</p> <p>남천2동 3-66번지 대지 220.8m²의 부산시 소유 대지에는 88년말부터 민락동 15통 5반 구동빌라 201호 거주 남부생이 스레트 건물 10평 정도를 건립하여 슈퍼마켓 점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 연료용 박스 3개(3평 정도)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토록 방치하여 공유재산의 선량 한 관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별첨 사진 참조)</p>	

문현동 산55-2	임야 시유지 $2,182\text{m}^2$	<p>○ 문현여상뒷산 무단 형질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 문현1동 557-53 문현여상학교장 송병한 - 목적 : 학교운동장 활용 - 현상태 : 무단형질변경한 $2,182\text{m}^2$ 을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p>○ 문제점 : 현재 변상금은 미부과한 상태이고 구청에서나 동에서는 방치해두고 있음</p>	
		<p>○ 대책 : 현재까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공용 차고 지나 주민의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p>	

III. 問題點

0. 공유재산관리는 부서별 분산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한 민원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선 동사무소에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사무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서는 국·공유지 관리 업무에 대하여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동장 이하 전직원이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상태며,

0. 일선 동사무소에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은 위임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0. 또한 구청에서도 국·공유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일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이 활용하는 것은 찾아내어 구세수를 증대하거나 전체 구민에게 공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함.